

제주 오름 활용 문화콘텐츠 상품(시제품) 제작지원 사업

(재)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아 제주오름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상품 개발로 코로나로 위축되어 있는 제주 문화콘텐츠 사업의 확산과 우수한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제품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문화산업관련 기업, 스타트업 및 개인창작자에게 시제품제작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본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0. 9.

(재)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장

1. 사업개요

- 사업명 : 제주오름 활용 문화콘텐츠 상품(시제품) 개발지원
- 사업기간: 협약체결일 ~ 2020년 12월 16일
- 지원금: 과제당 5백만원
- 지원편수: 6개 과제
- 지원자격: 공고일 기준 주소지 혹은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문화산업관련 기업 및 만 18세이상의 개인창작자

2. 지원내용

지원분야	지원규모
제주오름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상품(시제품) 개발지원 6개	총30백만원
▶ 국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 및 지속생산을 계획중인 상품 ▶ 상용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(개인창작자)의 시제품 및 초도 물량 제작비용 지원	

- 시제품제작 재료비, 외주가공비, 디자인설계비(3D스캐닝) 및 초기 제작 금형, 기타 제작 분야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

지원항목	세부내용
재료비	- 신청서 상의 시제품 제작을 위해 사용되는 재료 또는 원료 구입
제품 설계	-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제품설계(CAD or 3D) 등 - 제품형상 스캔을 통한 맞춤형 설계(*변형된 설계 가능)
제품디자인	- 제품외형/성능/기능 향상을 위한 디자인 및 제품개발
시제품 개발(목업)	- 양산 이전의 테스트 샘플 제작(Prototyping/Styling) - 설계부터 시작하여 목업 및 테스트 금형까지의 제작 (* 양산금형 제외)
초도양산	- 시장진출 테스트 및 마케팅용 초기 제품 제작
사업추진비	- 여비 등

○ 지원조건

- 협약종료일까지 제출한 과제기획서에 명시된 최종결과물 완료 가능한 기업(자)
- 동일한 내용(과제 목표,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)으로 우리 원이나 타 지원기관(정부 및 공공기관 등)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기업(자)

○ 선정 시 지원금의 100%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(보증보험 수수료는 자부담)

3. 접수일정 및 접수방법

- 공고기간: 2020. 9. 14(월) ~ 9. 27(일)
- 접수기간: 2020. 9. 14(월) ~ 9. 27(일)까지
- 제출방법: 온라인접수(culture@ofjeju.kr)만 가능
- 제출서류

No	제출서류	제출부수	비고
1	사업신청서	1부	관련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
2	과제기획서	1부	관련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
3	지원업체(개인)소개서	1부	관련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
4	사업 참여 서약서	1부	관련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
5	개인정보 이용동의서	1부	관련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
6	신청자격 자가진단서	1부	관련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
7	평가위원 추천표	1부	관련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
8	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	1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법인의 경우: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제출 ○ 개인사업자의 경우: 사업자등록증 1부 제출 ○ 개인창작자일 경우: 주민등록표등본 제출(창작자 이름과 주소만 노출, 기타 개인정보 삭제 후 제출)
9	국세·지방세완납증명서	각 1부	

- 관련서식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(www.ofjeju.or.kr)에서 다운로드
- 제출시 유의사항
 - 메일제목: ‘제주오름 활용 문화상품제작지원- 성명’ 으로 제출
 - 1번부터 9번까지 제출서류를 “성명.zip” 으로 압축하여 제출
 - 제출원본은 평가시 사업담당자에게 제출
 - ※ 접수파일과 제출원본의 내용이 다를 경우 추후 선정이후라도 취소처리
 - 제출서류는 아래 표의 순서대로 정렬하고 반드시 서명한 후 하나의 PDF파일로 변환하여 담당자의 e-mail주소로 제출하여야 하며, 마감 이후 수정 및 보완 불가.
 - 사업계획서 등 접수서류 내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.

4. 평가

- 선정방법: PT발표 및 과제계획서 종합평가(10분 발표, 10분 질의응답)
 - ※ 코로나19 이슈 및 내부사정으로 인해 평가방법 변경 가능
- 선정기준: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신청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
- 평가항목 및 배점

평가항목	평가주안점	배점
독창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술, 아이디어의 혁신성 및 독창성 ○ 제주오름 콘텐츠 적용 아이디어* 	40점
시장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계획된 창작품의 상품성과 대중성 정도 ○ 제작물의 시장성(유통/상품 가능성) 및 수익창출 가능성 	30점
사업 수행역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 추진목표의 명확성 및 실현가능성 ○ 신청자 및 팀원의 사업추진 능력 등 전문성 보유 정도 ○ 결과물에 대한 활용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 	20점
예산구성 적절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예산항목의 합리성 및 적절성 ○ 집행계획의 적정성 	10점
합계		100점

5. 기타

- 본 사업은 「문화산업진흥기본법」 제12조(유통활성화) 및 제20조(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)에 의거하여 수행되며, 선정된 개인창작자와 기업은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
-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후 신청 개인창작자와 기업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, 일체의 서류는 반환불가
- 지원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기관(자)이라 하더라도, 협약 시 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과제는 협약 취소
- 선정된 개인창작자와 기업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, 관련법에 따라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가능
-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, 지원금의 부당(유용, 횡령 등)사용,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할 경우, 해당 개인창작자와 기업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, 또한 향후 지원 사업 불가 등의 제재조치 가능
- 결과물 귀속
 - 저작권의 소유는 각 신청자에게 있음, 단 아래 사항과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및 (재)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에서 결과물 활용 가능
 - 가. 지원 작품의 전체 혹은 일부를 공익목적에 한해 온/오프라인 무료사용
 - 나. 제주특별자치도 및 (재)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에서 주최(과)하는 국내외 행사, 홍보 등에 활용
 - 다. (재)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 시설운영에 활용: 상영관, 전시, 정보관 등
 - 라. 기타 지원취지에 따른 홍보마케팅 및 영상물/책자 발간 등 (재)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 사업과 관련한 활용 등
- 유의사항
 - 타인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모든 문제의 책임은 신청자

에게 있음

-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개인창작자와 기업이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, 참여 신청서 및 과제계획서 내용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, 부정한 방법에 의한 선정으로 밝혀질 경우, 선정취소, 협약 해약, 지원금 환수 및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
- 중도 사업포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부담
- 이미 상품으로 시중에 나와 있거나 개발완료가 된 상품은 제외
- 선정 평가 기준 미달 시 과제를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

○ 신청(지원) 제외 대상(공고일기준)

-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
 - ※ 단,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,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자 또는 파산면책을 선고받은 자는 신청가능
- 국세·지방세 체납중인 자
- 신청일 현재 (재)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에서 부과한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자
- 정부, 지자체, 공공기관 등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
- 기타 참여제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

○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6. 문의

○ (재)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 문화산업팀

064-735-0628 / culture@ofjeju.kr / www.ofjeju.or.kr